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75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재개(평창군 직영)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운영일, 이용료 및 운영방법 (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안 제11조 내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5. 13. ~ 2021. 5. 23.) : 제출의견 4건(일부반영)

제출의견	반영여부	비고
국경일 → 공휴일	반영	안 제5조
이용료 균 금고 납입기한 추가	반영	안 제6조제3항
부칙내용 수정(연간회원권 외 월이용권 추가)	반영	부칙 제2조
일반주민이용료(5천원 ⇨ 4천원) 감액 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	미반영 반영	대화목욕탕 형평성 고려 별표1
주2회 휴무 → 주1회 휴무	미반영	시설운영
시설명칭 변경	미반영	추후 검토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개선의견	반영내용
수탁자의 의무 추가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고려 운영 명시)	안 제13조제5항
목욕탕 월액권에 생리할인 제도 적용	여성(만 10세 ~ 55세) 월액권 10% 할인 「별표1」 이용 요금표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기풍3길 5에 둔다.

②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설 : 목욕탕
2. 사용시설 : 체력단련실
3. 부대시설 : 동아리실, 소극장, 회의실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6.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센터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사용시간) ① 시설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봉평면장이 정하고 매주 월·목요일, 1월 1일, 설·추석 명절,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한다)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시설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의 군 금고 납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관리 등) ① 운영자는 목욕탕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내주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갖추고 이용료 및 사
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설 및 재
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
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
회에 한 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기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봉평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월이용권 및 연간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회원권 사용기간은 기존 회원권 종료일(코로나-19 등 부득이하게 휴무한날은 가산)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목욕탕		
구 분	금 액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장 애 인	무료	
국 가 유 공 자	무료	
경 로 우 대 자	3,000원	65세 이상
미 취 학 아 동	3,000원	
일 반 주 민	5,000원	
월 액 권	50,000원	만10세 ~ 55세 여성은 10% 할인

체력단련실		
구 분	금 액	비 고
체 력 단 련 실	무료	

동아리실, 소극장, 회의실		
구 분	금 액	비 고
동아리실 · 소극장 · 회의실	30,000원	1회(4시간 기준)
	15,000원	1회(2시간 기준)
	10,000원	1회(1시간 기준)
	무료	공공사용

※ 부가가치세포함 금액

[별지 제1호서식]

<p>NO. _____</p> <p>입 목 권 (보관용)</p> <p>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p>NO. _____</p> <p>입 목 권 (교부용)</p> <p>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	---

<p>NO. _____</p> <p>입 목 권 (보관용)</p> <p>경로우대자·미취학아동 (₩3,000)</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p>NO. _____</p> <p>입 목 권 (교부용)</p> <p>경로우대자·미취학아동 (₩3,000)</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	---

<p>NO. _____</p> <p>입 목 권 (보관용)</p> <p>일반주민 (₩5,000)</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p>NO. _____</p> <p>입 목 권 (교부용)</p> <p>일반주민 (₩5,000)</p> <p>20년 월 일</p> <p>평창군수</p>
--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일지

근 무 일 지				결 재	근무자	담당자	팀장	면장
근무일자					2000. 00. 00.			
근 무 자	오전	○ ○ ○	(서명)					
	오후	○ ○ ○	(서명)					

1. 오전

(단위:원)

	구분	상품명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특이 사항	비고	
					현금	카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목 욕 탕	월액권	50,000						
		일반주민	5,000						
		미취학아동	3,000						
		경로우대자	3,000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무료						
	대 관	동아리실		30,000					
				15,000					
				10,000					
		소극장		30,000					
				15,000					
				10,000					
		회의실		30,000					
				15,000					
				10,000					
	기타								
합계	매출액 합계 :		원	현금 수납액 :		확인 : ○○○ (서명)			

▼붙임▲ : 2021. 00. 00. 매출내역표 (← 포스기 매출전표 출력본 첨부)

2. 오후

(단위:원)

	구분	상품명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특이 사항	비고
					현금	카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목 욕 탕	월액권	50,000					
		일반주민	5,000					
		미취학아동	3,000					
		경로우대자	3,000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무료					
	대 관	동아리실	30,000					
			15,000					
			10,000					
		소극장	30,000					
			15,000					
			10,000					
		회의실	30,000					
			15,000					
			10,000					
	기타							
	합계	매출액 합계 :	원	현금 수납액 :	원	확인 : ○○○ (서명)		

▣붙임▲ : 2021. 00. 00. 매출내역표 (← 포스기 매출전표 출력본 첨부)

일일 매출액 : 원(현금 수납액 : 원) ★ 확인 : 오후 근무자 ○○○ (서명)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7호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운영비 지원)
- 비용발생 요인
 - 봉평문화복지센터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나. 추계 결과 (소요예산액 : 229,360천원)

- 인건비 4명 : 183,36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183,360천원(1일, 8시간)×5일×52주)
- 일반운영비 : 4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연락처	(033) 330 - 1366

